한화포레나 울산무거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9.19.(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I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분양보증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
상호	대신자산신탁(주)	에이치헤리티지(주)	㈜한화 건설부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5번길 5-17, 304호(중원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장교동)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0111-7124665 (829-87-01357)	124411-0405896 (537-86-03352)	110111-0002959 (202-81-16825)

구분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상호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선경엔지니어링	㈜이린	㈜일신이앤드씨
감리금액 (부가세별도)	4,135,318,000	838,149,091	807,367,618	173,000,000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12025-101-0003800 호	463,188,999,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II 공급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년 9월 29일 (월)	2025년 9월 30일 (화)	2025년 10월 1일 (수)	2025년 10월 15일 (수)	2025년 10월 17일 (금) ~ 2025년 10월 22일 (수)	2025년 10월 27일 (월) ~ 2025년 10월 29일 (수)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 - 17150호(2025.09.1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422-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8개동 총 816세대 [특별공급 394세대(기관 추천 59세대, 다자녀가구 122세대, 신혼부부 136세대, 생애최초 53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세대당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2025000364	01	084.9025A	84A	84.9025	24.2456	109.1481	72.7317	181.8798	48.5488	275	27	41	63	8	25	164	111	14
	02	084.9747B	84B	84.9747	25.5204	110.4951	72.7937	183.2888	48.5901	151	15	23	35	5	14	92	59	7
	03	084.9134C	84C	84.9134	24.4284	109.3418	72.7412	182.0830	48.5550	165	17	25	38	5	14	99	66	9
	04	099.8274	99	99.8274	28.9232	128.7506	85.5173	214.2679	57.0831	67	-	10	-	2	-	12	55	3
	05	109.9121	109	109.9121	30.3805	140.2926	94.1564	234.4490	62.8497	156	-	23	-	4	-	27	129	7
	06	166.9637	166P	166.9637	50.1624	217.1261	143.0298	360.1559	95.4728	2	-	-	-	-	-	-	2	-
	합계									816	59	122	136	24	53	394	422	40

IV 공급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 방법

(단위 : 원/부가세포함)

구분	동호라인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이내	중도금(60%) 1차(10%) 2026-05-15	2차(10%) 2026-10-15	3차(10%) 2027-03-15	4차(10%) 2027-08-16	5차(10%) 2028-01-17	6차(10%) 2028-06-15	잔금(30%) 잔금 입주지정일
84A	102동3,4호 103동4,5호 104동5호 105동5호 106동5호 107동1호	1층	3	325,192,680	377,167,320		702,360,000	10,000,000	60,236,000	70,236,000	70,236,000	70,236,000	70,236,000	70,236,000	70,236,000	210,708,000
		2층	8	332,350,660	385,469,340		717,820,000	10,000,000	61,782,000	71,782,000	71,782,000	71,782,000	71,782,000	71,782,000	71,782,000	215,346,000
		3층	8	341,281,930	395,828,070		737,110,000	10,000,000	63,711,000	73,711,000	73,711,000	73,711,000	73,711,000	73,711,000	73,711,000	221,133,000
		4층	8	346,615,690	402,014,310		748,630,000	10,000,000	6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224,589,000
		5~9층	40	351,995,750	408,254,250		760,250,000	10,000,000	66,025,000	76,025,000	76,025,000	76,025,000	76,025,000	76,025,000	76,025,000	228,075,000
		10~19층	74	357,375,810	414,494,190		771,870,000	10,000,000	67,187,000	77,187,000	77,187,000	77,187,000	77,187,000	77,187,000	77,187,000	231,561,000
		20층이상	32	358,769,440	416,110,560		774,880,000	10,000,000	67,488,000	77,488,000	77,488,000	77,488,000	77,488,000	77,488,000	77,488,000	232,464,000
	101동3호 105동1호 106동2,3호 108동2,3호	1층	1	326,827,070	379,062,930		705,890,000	10,000,000	60,589,000	70,589,000	70,589,000	70,589,000	70,589,000	70,589,000	70,589,000	211,767,000
		2층	6	334,031,350	387,418,650		721,450,000	10,000,000	62,145,000	72,145,000	72,145,000	72,145,000	72,145,000	72,145,000	72,145,000	216,435,000
		3층	6	342,962,620	397,777,380		740,740,000	10,000,000	64,074,000	74,074,000	74,074,000	74,074,000	74,074,000	74,074,000	74,074,000	222,222,000
		4층	6	348,393,610	404,076,390		752,470,000	10,000,000	65,247,000	75,247,000	75,247,000	75,247,000	75,247,000	75,247,000	75,247,000	225,741,000
		5~9층	30	353,773,670	410,316,330		764,090,000	10,000,000	66,409,000	76,409,000	76,409,000	76,409,000	76,409,000	76,409,000	76,409,000	229,227,000
		10~19층	45	359,153,730	416,556,270		775,710,000	10,000,000	67,571,000	77,571,000	77,571,000	77,571,000	77,571,000	77,571,000	77,571,000	232,713,000
		20층이상	8	360,593,660	418,226,340		778,820,000	10,000,000	67,882,000	77,882,000	77,882,000	77,882,000	77,882,000	77,882,000	77,882,000	233,646,000
84B	101동4호	1층	1	320,965,490	372,264,510		693,230,000	10,000,000	59,323,000	69,323,000	69,323,000	69,323,000	69,323,000	69,323,000	69,323,000	207,969,000
		2층	1	328,026,240	380,453,760		708,480,000	10,000,000	60,848,000	70,848,000	70,848,000	70,848,000	70,848,000	70,848,000	70,848,000	212,544,000
		3층	1	336,864,910	390,705,090		727,570,000	10,000,000	62,757,000	72,757,000	72,757,000	72,757,000	72,757,000	72,757,000	72,757,000	218,271,000
		4층	1	342,147,740	396,832,260		738,980,000	10,000,000	63,898,000	73,898,000	73,898,000	73,898,000	73,898,000	73,898,000	73,898,000	221,694,000
		5~9층	5	347,430,570	402,959,430		750,390,000	10,000,000	65,039,000	75,039,000	75,039,000	75,039,000	75,039,000	75,039,000	75,039,000	225,117,000
		10~19층	10	352,718,030	409,091,970		761,810,000	10,000,000	66,181,000	76,181,000	76,181,000	76,181,000	76,181,000	76,181,000	76,181,000	228,543,000
		20층이상	4	354,107,030	410,702,970		764,810,000	10,000,000	66,481,000	76,481,000	76,481,000	76,481,000	76,481,000	76,481,000	76,481,000	229,443,000
	102동2호 103동3호 104동4호 105동4호 106동4호 108동4호	1층	3	322,599,880	374,160,120		696,760,000	10,000,000	59,676,000	69,676,000	69,676,000	69,676,000	69,676,000	69,676,000	69,676,000	209,028,000
		2층	6	329,660,630	382,349,370		712,010,000	10,000,000	61,201,000	71,201,000	71,201,000	71,201,000	71,201,000	71,201,000	71,201,000	213,603,000
		3층	6	338,545,600	392,654,400		731,200,000	10,000,000	63,120,000	73,120,000	73,120,000	73,120,000	73,120,000	73,120,000	73,120,000	219,360,000
		4층	6	343,879,360	398,840,640		742,720,000	10,000,000	64,272,000	74,272,000	74,272,000	74,272,000	74,272,000	74,272,000	74,272,000	222,816,000
		5~9층	30	349,162,190	404,967,810		754,130,000	10,000,000	65,413,000	75,413,000	75,413,000	75,413,000	75,413,000	75,413,000	75,413,000	226,239,000
		10~19층	57	354,491,320	411,148,680		765,640,000	10,000,000	66,564,000	76,564,000	76,564,000	76,564,000	76,564,000	76,564,000	76,564,000	229,692,000
		20층이상	20	355,884,950	412,765,050		768,650,000	10,000,000	66,865,000	76,865,000	76,865,000	76,865,000	76,865,000	76,865,000	76,865,000	230,595,000
84C	101동5호 102동5호 103동6호 104동6호 105동6호 107동2호	1층	5	318,613,450	369,536,550		688,150,000	10,000,000	58,815,000	68,815,000	68,815,000	68,815,000	68,815,000	68,815,000	68,815,000	206,445,000
		2층	6	325,623,270	377,666,730		703,290,000	10,000,000	60,329,000	70,329,000	70,329,000	70,329,000	70,329,000	70,329,000	70,329,000	210,987,000
		3층	6	334,364,710	387,805,290		722,170,000	10,000,000	62,217,000	72,217,000	72,217,000	72,217,000	72,217,000	72,217,000	72,217,000	216,651,000
		4층	6	339,601,240	393,878,760		733,480,000	10,000,000	63,348,000	73,348,000	73,348,000	73,348,000	73,348,000	73,348,000	73,348,000	220,044,000
		5~9층	30	344,837,770	399,952,230		744,790,000	10,000,000	64,479,000	74,479,000	74,479,000	74,479,000	74,479,000	74,479,000	74,479,000	223,437,000
		10~19층	53	350,120,600	406,079,400		756,200,000	10,000,000	65,620,000	75,620,000	75,620,000	75,620,000	75,620,000	75,620,000	75,620,000	226,860,000
		20층이상	15	351,514,230	407,695,770		759,210,000	10,000,000	6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75,921,000	227,763,000
	108동5호	1층	1	315,390,970	365,799,030		681,190,000	10,000,000	58,119,000	68,119,000	68,119,000	68,119,000	68,119,000	68,119,000	68,119,000	204,357,000
		2층	1	322,359,120	373,880,880		696,240,000	10,000,000	59,624,000	69,624,000	69,624,000	69,624,000	69,624,000	69,624,000	69,624,000	208,872,000
		3층	1	331,003,330	383,906,670		714,910,000	10,000,000	61,491,000	71,491,000	71,491,000	71,491,000	71,491,000	71,491,000	71,491,000	214,473,000
		4층	1	336,193,560	389,926,440		726,120,000	10,000,000	62,612,000	72,612,000	72,612,000	72,612,000	72,612,000	72,612,000	72,612,000	217,836,000
		5~9층	5	341,425,460	395,994,540		737,420,000	10,000,000	63,742,000	73,742,000	73,742,000	73,742,000	73,742,000	73,742,000	73,742,000	221,226,000
		10~19층	9	346,615,690	402,014,310		748,630,000	10,000,000	6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224,589,000
	106동1호 108동1호	1층	2	320,196,910	371,373,090		691,570,000	10,000,000	59,157,000	69,157,000	69,157,000	69,157,000	69,157,000	69,157,000	69,157,000	207,471,000
		2층	2	327,257,660	379,562,340		706,820,000	10,000,000	60,682,000	70,682,000	70,682,000	70,682,000	70,682,000	70,682,000	70,682,000	212,046,000
		3층	2	336,050,030	389,759,970		725,810,000	10,000,000	62,581,000	72,581,000	72,581,000	72,581,000	72,581,000	72,581,000	72,581,000	217,743,000
		4층	2	341,332,860	395,887,140		737,220,000	10,000,000	63,722,000	73,722,000	73,722,000	73,722,000	73,722,000	73,722,000	73,722,000	221,166,000
		5~9층	10	346,615,690	402,014,310		748,630,000	10,000,000	6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74,863,000	224,589,000
		10~19층	8	351,852,220	408,087,780		759,940,000	10,000,000	65,994,000	75,994,000	75,994,000	75,994,000	75,994,000	75,994,000	75,994,000	227,982,000
99	101동1호 103동1호 104동1호	1층	3	366,266,480	425,503,200	42,550,320	834,320,000	10,000,000	73,432,000	83,432,000	83,432,000	83,432,000	83,432,000	83,432,000	83,432,000	250,296,000
		2층	3	374,330,910	434,871,900	43,487,190	852,690,000	10,000,000	75,269,000	85,269,000	85,269,000	85,269,000	85,269,000	85,269,000	85,269,000	255,807,000
		3층	3	384,392,790	446,561,100	44,656,110	875,610,000	10,000,000	77,561,000	87,561,000	87,561,000	87,561,000	87,561,000	87,561,000	87,561,000	262,683,000
		4층	3	390,407,090	453,548,100	45,354,810	889,310,000	10,000,000	78,931,000	88,931,000	88,931,000	88,931,000	88,931,000	88,931,000	88,931,000	266,793,000
		5~9층	15	396,465,290	460,586,100	46,058,610	903,110,000	10,000,000	80,311,000	90,311,000	90,311,000	90,311,000	90,311,000	90,311,000	90,311,000	270,933,000
		10~19층	30	402,475,200	467,568,000	46,756,800	916,800,000	10,000,000	8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91,680,000	275,040,000
		20층이상	10	404,117,060	469,475,400	46,947,540	920,540,000	10,000,000	82,054,000	92,054,000	92,054,000	92,054,000	92,054,000	92,054,000	92,054,000	276,162,000
109	101동2호 102동1호 103동2호 104동2,3호 105동2,3호	1층	5	390,358,800	453,492,000	45,349,200	889,200,000	10,000,000	78,920,000	88,920,000	88,920,000	88,920,000	88,920,000	88,920,000	88,920,000	266,760,000
		2층	7	398,923,690	463,442,100	46,344,210	908,710,000	10,000,000	80,871,000	90,871,000	90,871,000	90,871,000	90,871,000	90,871,000	90,871,000	272,613,000
		3층	7	409,626,510	475,875,900	47,587,590	933,090,000	10,000,000	83,309,000	93,309,000	93,309,000	93,309,000	93,309,000	93,309,000	93,309,000	279,927,000
		4층	7	416,092,980	483,388,200	48,338,820	947,820,000	10,000,000	84,782,000	94,782,000	94,782,000	94,782,000	94,782,000	94,782,000	94,782,000	284,346,000
		5~9층	35	422,515,550	490,849,500	49,084,950	962,450,000	10,000,000	86,245,000	96,245,000	96,245,000	96,245,000	96,245,000	96,245,000	96,245,000	288,735,000
		10~19층	70	428,938,120	498,310,800	49,831,080	977,080,000	10,000,000	87,708,000	97,708,000	97,708,000	97,708,000	97,708,000	97,708,000	97,708,000	293,124,000
		20층이상	25	430,667,780	500,320,200	50,032,020	981,020,000	10,000,000	88,102,000	98,102,000	98,102,000	98,102,000	98,102,000	98,102,000	98,102,000	294,306,000
166P	101동3호 102동2호	20층이상	2	771,292,270	896,034,300	89,603,430	1,756,930,000	10,000,000	165,693,000	175,693,000	175,693,000	175,693,000	175,693,000	175,693,000	175,693,000	527,079,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1차 계약금	수협	1010-2728-0700	대신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대신자산신탁(주)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공급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세대별로 가상전용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수협, 1010-2728-0700, 예금주 대신자산신탁(주))로 관리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01동 101호 : 서명란에 "1010101홍길동"이라고 정확히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은 1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별도의 환불이자는 없음)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계약 시	잔금 90% 입주지정일	비고
84A	18,900,000	1,890,000	17,010,000	
84B	18,900,000	1,890,000	17,010,000	
84C	18,900,000	1,890,000	17,010,000	
99	22,100,000	2,210,000	19,890,000	
109	24,100,000	2,410,000	21,690,000	
166P	27,300,000	2,730,000	24,570,000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계약금, 잔금)	수협	1010-2728-0566	대신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 선택품목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계약금 및 잔금 약정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 및 기타품목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합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비 분양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V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및 신청자격

구분			84A	84B	84C	99	109	166P	합계
기관 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2	3	-	-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5	2	3	-	-	-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2	3	-	-	-	10
	중소기업 근로자		5	2	3	-	-	-	10
	장애인	울산광역시	3	3	3	-	-	-	9
		부산광역시	2	2	1	-	-	-	5
		경상남도	2	2	1	-	-	-	5
	소계		27	15	17	-	-	-	5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1	23	25	10	23	-	122
신혼부부 특별공급			63	35	38	-	-	-	13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5	5	2	4	-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14	14	-	-	-	53
합계			164	92	99	12	27	-	394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참조) - 기관 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 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일반공급 공통사항 및 신청자격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지역'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 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 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울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 지역 거주자 (울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나목) 참조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부양**' 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 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I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 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①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당첨자는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④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VII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구분	일정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년 10월 27일 (월) ~ 2025년 10월 29일 (수)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추후 별도 안내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VII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년 10월 15일 (수) ~ 2025년 10월 24일 (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 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 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년 10월 15일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 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052.269.7771
www.forena-ulsan.com **견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총 816세대 대단지 84㎡ / 99㎡ / 109㎡ / 166㎡P
시행수탁사 Daishin 자산신탁 시행위탁사 **에이치헤리티지(주)** 시공사 **(주)한화 건설부문**